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741
----------	--------

제안일자 : 2015. 12. 17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‘1인가구 밀집지역’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“1인가구 밀집지역의 경우에는”을 “1인 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함(안 제8조제3항제2호가목(5)).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3항제2호가목(5) 중 “1인가구 밀집지역의 경우에는”을
“1인 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8조(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</p> <p>가. 건축계획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(1)~(4)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8조(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/p> <p>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(1)~(4)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(5) 1인가구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범죄 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</u></p>	<p>제8조(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/p> <p>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(1)~(4)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(5) 1인 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-</u> ----- -----</p> <p>나.~바. (현행과 같음)</p>
<p>나.~바. (생략)</p>	<p>나.~바. (현행과 같음)</p>	<p>나.~바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2호가목에 (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5) 1인 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
환경설계에 관한 계획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</p> <p>가. 건축계획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(1)~(4)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나.~바. (생략)</p>	<p>제8조(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가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(1)~(4) (현행과 같음)</p> <p>(5) <u>1인 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</u></p> <p>나.~바. (현행과 같음)</p>